



가정통신문

군산시 석치1길 17 ☎ 469-7220(교무실)
<http://gunsang.kr>

발행인 : 교장 김태현
편집 : 교무운영부
발행일 : 2021. 3. 31.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도 활력이 넘치는 군산상고를 시샘하듯 먼 발자취를 드리우며 멀어져 가고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라 합니다. 싱그러운 봄소식과 함께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교직원 모두는 학부모님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교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군산상업고등학교 교장



1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2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지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에 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

4 교육활동 침해 예방은?

교원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도 필요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5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view.do?mId=70&brdIdx=14>